

#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지침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정 1995. 1. 1 | 개정 2015. 1.28 | 개정 2022.10.28 |
| 개정 2002. 2. 1 | 개정 2018. 9. 1 | 개정 2023. 3. 1 |
| 개정 2009. 1. 1 | 개정 2021. 3. 1 |               |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법인과 경영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인 임직원 (무보수, 계약직, 임시직 및 일용직 제외)
2. 경영학교의 장 및 교직원 (비전임교원, 조교, 상근직, 연봉계약직, 연구계약직, 무보수, 임시직 및 일용직 제외)(개정: 2022. 10. 28.)

제3조(지급기준)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삭제) : (2021.3.1.)
2. 법인 임직원 및 경영학교 장, 임원, 교직원의 자녀가 교육부가 정하는 대학(2년제 대학 포함)에 재학중이거나 국외의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.
  - 가. 수당지급액은 자녀의 등록금 중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, 자녀가 국외의 대학에 재학중일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동일계열(학과) 기준액으로 지급한다.(개정: 2023. 3. 1.)
  - 나.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자녀 이내에서는 가목 전액을 지급하며, 3자녀는 총 1억 2천만원 한도 내(2자녀 지원액 포함), 4자녀 이상은 1억 6천만원(3자녀 지원액 포함) 한도 내 지급한다. 다만, 셋째 자녀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와 쌍생아일 경우 3자녀까지 가목 전액을 지급한다.(개정: 2023. 3. 1.)
  - 다. 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기준수업년한으로 하며, 총 지급기간 범위(4년제:8회, 6년제:12회) 내에서 수혜자녀를 교체할 수 있다. 다만, 수혜자녀를 교체할 경우 입학금은 수당 지급액에서 제외한다.
  - 라. 수당의 지급시기는 2월(1학기), 8월(2학기)의 급여지급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학기 기준액으로 지급한 후 익월 급여지급시에 가감 정산할 수 있다.
  - 마. 수당은 수당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 및 경영학교의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며, 이미 지급된 수당은 계산착오 등을 제외하고는 환수하지 않는다.
  - 바. 수당은 수당지급일 기준 근속 1년 미만의 교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인 및 경영학교 임원과 부교수급 이상의 교원은 근속 제한이 없으며, 직

원의 경우 POSCO 그룹내 재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(중복수혜제한) 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가 법인 및 경영학교의 임원 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일방에게만 지급한다.

② 법인 및 경영학교에서 근무한 자가 퇴직후 재임용된 경우 당해 임원 또는 교직원이 퇴직전 수혜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은 재임용된 후 이 지침에 의거 이미 수혜 받은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

이 지침은 1995. 1. 1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이 지침은 1999. 9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대학자녀의 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 지급지침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이 지침은 2002. 2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이 지침은 2009. 1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3조 제1호 제 나목은 2009년 입학자녀부터 적용한다. 단, 2008년도에 특수계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녀는 동일계열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지침은 2015. 1. 28부로 개정하되, 2016년 입학자녀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지침은 2018. 9. 1부로 개정하되, 제3조 1호 마목은 2018.12.1.일부로 적용한다.

## 부 칙

1. 이 지침은 2021. 3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①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기존의 자녀학비보조수당(입학금+수업료+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)의 지급은 유지하되, 무상교육 이전인 2020년의 등록금 기준으로 지급한도를 정한다. 단. 기존의 등록금이 없는 학교의 지원제도는 폐지하고, 「초.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자녀(만15-17세)의 교육관련 부대비용 지원은 유지한다.

### ②지급한도

가. 특수계열: 938,800원/분기별 (입학금 28,200원)

나. 일반계열 이외의 각종학교 및 국외학교 : 469,400원/분기별 (입학금 14,100원)

다. 장애자녀: 300,000원/분기별

- ③단, 제 1항에도 불구하고 「초.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자녀(만15-17세)의 경우, 이 규정 개정 이후 임용된 재직자의 자녀까지도 포함하여 교육 관련 부대비용을 지원한다.

## 부 칙

이 지침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